

# 西獨商標制度解說



白 文 久

<辨理士>

西獨의 商標法은 1968년에 一部改正하여 10年동안 施行해 오던 것을 工業所有權의 國際化趨勢에 副應하고 EPC加盟國間의 制度의 統一化를 갖추기 위하여 1979年 7月에 現行商標法을大幅改正하였다.

따라서 지난해 改正된 西獨商標法의 概要는 다음과 같다.

## ① 商標登録

自己의 商品을 他企業의 상품과 区別할 目的으로 그가 営爲하는 事業을 위해서 商標를 사용하고자 願하는 者는 누구든지 그 상표를 商標登録簿에 登錄申請을 提出할 수 있다.

이 상표등록부는 西獨特許廳에 保存되어 있으므로 商標登録에 관한 申請書를 書面으로 作成, 특허청에 提出하되 모든 신청서에는 商標가 사용되고 있는 事業體名, 그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商品目錄 및 明白한 內容說明, 그리고 필요

한 경우에는 圖案도 添付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基本의 申請手數料 및 保護費를 支拂하는 商品 및 事業의 追加分類에 관한 分類手數料를 신청서와 같이 支拂하여야 한다.

한편 商標登録簿에는 申請書의 提出日字, 事業體名,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商品目錄, 商標所有權者의 姓名과 住所, 그리고 合法의 代表者 및 身分上의 變更事項, 所有權者 및 保護期間의 更新事項, 商標取消日字 등을 收錄記載하고 있다.

商標登録에서 다음 事項은 登錄할 수가 없다.

(1) 등록상표를 他商品과 識別할 수 없거나 또는 生產品의 種類, 時日 및 場所, 그리고 商品의 內容, 目的, 價格, 數量 또는 重量에 관한 것을 示唆하는 數字, 字句 또는 語彙로만 構成되어 있을 경우.

(2) 상표가 어떤 特定國家의 紋章, 旗章 또는 地方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紋章을 收錄하고 있을 경우

(3) 合法의 通过 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는 政府間國際機關의 紋章, 旗章이나 標識 또는 名稱

(4) 明白히 事實과 符合되지 않고 混亂을 起할 危險性이 있는 標識

(5) 同一 또는 類似한 商品에 관하여 商標로서 이미 사용되고 있음은 아는 事項 등이다.

## ② 審查 및 異議申請

商標에 대한 登錄申請書가 제출되었을 경우, 關係法令의 要求事項을 充足시키고 있는지 또는 등록에 관한 아무런 障害가 없는지를 確認하여 特許廳은 出願公告를 한다.

출원공고에는 登錄出願에 관계되는 상표, 出願日, 出願人 및 代理人을 選任했을 때는 合法의 으로 指定한 代表者的 姓名 및 住所 그리고 出願書에 添付한 書面의 內容 그리고 출원서의 一連番號등 신청서에 관계되는 事項들을 商標公報에 揭載하여 發表한다.

그리하여 審查官이 登錄申請書가 제출된 상표가 同一 또는 類似한 商品에 관하여 先願된 他人의 상표와 동일하다고 認知하게 되면 後者の 申請者로 하여금 當該出願公告에 대한 注意를喚起시킨다.

따라서 登錄申請한 상표와同一 또는類似한商品에 관계되는 상표를 이미 등록출원한 者는 後者の 登錄出願公告에 대해서 그 出願公告日로부터 3個月 以內에 異議申請을 提起할 수가 있다.

異議申請期間을 嚴守하지 않으면 안되고 이의 신청에 관계되는 手數料는 그 期間期에 納付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看做하게 된다.

異議申請人이 異議의 理由로 하는 상표가 後者出願公告日 以前의 5年동안 商標登錄簿에 登錄되어 있어야 하고 공고전 5년간에 그 상표를 사용했다는 事實을 證明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異議申請을 提起한 者의 同意를 얻어서 第3者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도 이의신청인의 상표사용으로 看做 處理한다.

特許廳은 異議申請의 類似性 與否를 決定함에 있어서는 異議申請人이 使用을 證明한 商品만을 參酌對象으로 삼는다.

그러나 異議가 提出되지 않았을 경우와 異議申請이 있더라도 審查結果 類似성이 發見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異의를 登錄되거나 類似성이 發見되었을 때는 登錄은 拒絕된다.

### ③ 商標의 移轉 및 保護期間

商標登錄으로부터 發生하는 權利는 相續, 其他 異의를 承繼者에게 移轉되거나 第3者에게도 移讓할 수가 있으되 이러한 權利는 異의를 관리되어 있는 事業의 全部 또는一部와 함께 移轉해야만 한다.

그리고 權利承繼者的 要請에 의해서 讓渡事項을 登錄原簿에 記錄하되 이 경우 關聯證據內容을 特許廳에 提供해 주야하는 것이다.

양도사항이 상표등록부에 記錄되지 않는限에는 權利의 承繼者는 異의를 登錄으로부터 派生하는 그의 權利主張을 할 수가 없다.

한편 登錄商標의 保護는 出願翌日로부터 起算하여 10年間 存續하며 10年間 더 延長할 수 있다.

### ④ 登錄商標의 取消

商標權者의 請求에 의하여 商標登錄은 何時라도 商標原簿에서 抹消시킬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特許廳長의 職權으로 다음의 경우 상표등록을 取消시킬 수 있다.

(1) 保護期間이 滿了되었는데 延長申請을 하지 않았을 때

(2) 異의를 拒絕事由가 發生했을 때이다. 또한 第3者가 다음의 경우 상표등록의 취소를請求할 수가 있다.

(1) 先出願에 따라自己名義로서同一 또는類似한商品에 관하여 상표가 商標原簿에 등록되어 있을 때

(2) 異의를 關聯된 事業이 商標權者에 의해서 違行되지 않고 있을 때

(3) 商標의 要部가 事實과 符合되지 않고 오히려 混同을 일으킬 憂慮가 있을 때

(4) 商標가 적어도 5년간 商標原簿에 登錄되어 商標權者가 取消請求前 5年間 異의를 使用하지 않았을 때 등이다.

### ⑤ 商標權侵害 및 罰則

他人의 名稱이나 法으로 保護받고 있는 商標를 去來上 不法으로 商標, 定價表, 카탈로그등에 사용하는 者이거나 不法으로 異의를 表示를 붙여 商品流通이나 販賣한 者에 대해서는 그被害者는 法院에 使用禁止에 대한 請求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故意 또는 過失로서 앞서 말한 行爲를 한 者는被害者에 그로인해 發生한 損害賠償을 할 責任을 져야할 뿐만 아니라 罰金 또는 6個月以內의 禁錮에 處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또한 商品의 出處, 性質이나 價值에 관한 虛偽表示로서 誤認混同을 이르킬 憂慮가 있는 것을 去來上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상품이나 容器包裝에 사용하는 者이거나 流通 및 販賣廣告로서 사용한자도 罰金이나 禁錮에 處하게 되어 있다.

### ⑥ 商標登錄關係部署

#### 1. 審查部

商標登錄出願의 審查 및 異의申請處理를 하며 法務 또는 技術職員(審查官)으로 構成하여 法院에 抗訴하는 業務까지 擔當한다.

#### 2. 商標部

商標出願에서 登錄 및 讓渡, 取消까지 登錄原簿管理業務를 管掌한다.